

4412	3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 상인 것	10%
4412	9	기타		
4412	99	기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 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 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率)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17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4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찰쌀, 냉동명태 등 12개 품목에 대한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조정관세율과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 계속 필요한 나프타에 대한 0.5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2017년도와 같이 유지하고,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은 냉동콩치의 조정관세율은 2퍼센트포인트 인하하는 등 총 14개 품목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김동연

●대통령령 제2851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수입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별표 2]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수입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별표 3]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겔라(<i>Anguilla</i>)종]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3	50 메트릭톤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유장	사료용	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농축 단백질	사료용	0	2만1천 메트릭톤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manioc) · 칩뿌리 · 살렘(salep)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 ·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chip)	주정용	10	13만 메트릭톤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수입전량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겔보리	사료용	0	5만 메트릭톤
1004		귀리			
1004	90	기타	사료용	0	수입전량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0	1천만 메트릭톤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90	기타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0	150만 메트릭톤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2	목화씨			
1207	29	기타			
		1. 사료용	0		수입전량
1214		스 위 드 (swede) · 멥 골 드 (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초 ·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0		
		1. 사료용			
1214	90	기타			수입전량
		2. 기타			
		가.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1) 사료용	0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0		
		2. 기타			
		나. 기타	0		60만 메트릭톤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기타	사료용	0	
1518	00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3. 기타 가. 사료용		0	3만 메트릭톤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5	9만5천 메트릭톤
1701	99	기타		5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	1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	11	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사료용 유당(乳糖)	0	8천 메트릭톤	
1702	19	기타	사료용 유당(乳糖)	0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	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사료용	0	1만5천 메트릭톤	
1703	90	기타	사료용	0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	30	밀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5만6천 메트릭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다음 각 호의 것		
			1. 사료용 비트펄프(beet-pulp)	0	수입전량
			2. 버섯재배용 비트펄프(beet-pulp)	0	2만 메트릭톤
2303	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1. 사료용		0	수입전량
2304	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사료용	0	245만1천 메트릭톤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수입전량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목화씨 껍질	1. 사료용	0	수입전량
			2. 버섯재배용	0	5천 메트릭톤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90	기타				
		4. 기타	사료용	0	6천 메트릭톤	
2704	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 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1. 코크스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0	수입전량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다음 각 호의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5	2억4천만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2.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	3천3백만 배럴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2		수입전량
2711	13	부탄	2		
2825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 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 금 속과산화물			
2825	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2. 수산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수입전량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 · 수산화염 화물, 브롬화물 · 산화브롬화물 과 요드화물 · 산화요드화물			
2827	4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	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2. 수산화염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5	황산구리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09	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1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결합을 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 유도체				
2914	7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1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 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 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 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 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 화유도체				
2915	3	초산에스테르				
2915	3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 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 한다]	1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 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 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 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 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 체				
2916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 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 들의 유도체				
2916	1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 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 한다)	1		

2916	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젠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16	3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젠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16	3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젠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젠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30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젠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18	9	기타				
2918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90	기타				
		1. 인산에스테르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0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4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1	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1	4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포스파미돈(ISO)(「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1		
2924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4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5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알라클로르(ISO)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4	29	기타				
		3. 기타				
		다.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	1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5	2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28	0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0		유기-황화합물				
2930	20	티오키르바메이트와 디티오키르바메이트				
		1. 티오키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 디티오키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0	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티우람디술파이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1		
293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	1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2	20	락톤 10.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2	9	기타				
2932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1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11	페니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3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3	2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3	3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3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3	4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	4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3	5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5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3	6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69	기타 3. 기타 나.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3	7	락탐				
2933	79	그 밖의 락탐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3	9	기타				
2933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10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4	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4	9	기타				
2934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35		술폰아미드				
2935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41		항생물질				
2941	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41	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94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1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13	비이온성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3808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	9	기타				
3808	91	살충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3808	92	살균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3808	93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식물성장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1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2. 향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		
2803	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1. 아세틸렌 블랙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9	기타			
		2. 황산코발트			
		가.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전량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	2	인산염			
2835	29	기타	인산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	90	기타	리튬코발트산화물(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2853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중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3	90	기타	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1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수입전량
2922	19	기타	세리놀(2-amino-1,3-propanediol)(조영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2922	4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	49	기타	5-아미노-2,4,6-트리요오드이소프탈산 클로라이드(5-amino-2,4,6-triiodo isophthaloyl di chloride)(조영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9	기타				
2934	99	기타				
		2. 기타	테트라플루오로붕소산 염(이차전지용 전해액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1		30만 메트릭톤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 기타	2	수입전량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0	수입전량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전량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0	수입전량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3. 기타	1. 이차전지 제조용 흑연화합물	0	수입전량
			2.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0	수입전량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펄프의 것은 제외한다.	0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90	기타	올레핀 중합체(카메라 렌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6	플루오르 중합체			
3904	69	기타	PVDF 바인더(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	9	기타			
3905	91	공중합체(共重合體)	폴리알코올 공중합체(이차전지용 격리막 바인더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막(箔)·스트립			
3921	1	셀룰러			
3921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2.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6. 기타	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0	수입전량

3921	90	기타	파우치(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4	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	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		수입전량
4104	19	기타	1		
4104	4	건조 상태의 것(크리스트)			
4104	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		
4104	49	기타	1		
5002	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white silk)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나.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다.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0		2백 메트릭톤
		라.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		
		2. 옥사(doupion silk)		0		
		3. 기타		0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 다)				
5205	1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 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 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수 이하)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 (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		수입전량
5205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 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 로 한정한다]				
5205	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 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 과 43수 이하)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 (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 nd yarn)는 제외한다.		0		
5205	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 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 과 52수 이하)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 (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4		수입전량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 은 제외한다]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의 것				
		1. 이형단면인 것		0		
		2.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0		수입전량
		3. 기타		0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 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 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 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				
6815	10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기체확산층(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7006	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 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 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 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 인 것은 제외한다)				

7202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	수입전량
		합금철(ferro-alloy)			
	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410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1	수입전량
	49	기타		1	수입전량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	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	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동박(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3,110 메트릭톤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90	부분품	판유리 제조용(액정표시장치용 강화 유리기판의 원재료를 균질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	80	그 밖의 기계	절단기(이차전지 이온 교환막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	8	그 밖의 기기			
	89	기타	도포기(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 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2. 도포기			
		가.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	수입전량
		나. 기타		0	수입전량
8503	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발전기·발전세트의 것			
		나. 기타	전극막 접합체(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수입전량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			
	1	전극			
	11	노(爐)용			수입전량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	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집속이온빔장치[유기 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	4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	49	기타	패턴인스펙션[유기 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9031	80	그 밖의 기기	단차측정기[유기 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7년 12월 31일로 이러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77개 품목 중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천연가스(LNG) 등 56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13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6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68개 품목의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김동연

●대통령령 제28514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즉시환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1회 거래가액의 한도를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